

국 민 안 전 처

시 정 요 구

제 목 ○○ 소하천 사업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함안군

내 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9조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⁷⁹⁾을 점검·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

이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함안군청 ○○○○과 2014년 6월 24일 경상남도 ○○군 ○○읍 ○○○길 ○○에 소재한 ○○○○○○(주)와 도급계약(도급액 2,072,477천원)을 체결하여 “○○소하천 정비공사”를 추진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, 2016. 1. 19. 시행)」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·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1. 전석쌓기 수량 산출 오류

하상보호공 전석 수량산출 시 공극률에 해당하는 0.7을 곱하여 수량을 산출($1630m^3 \rightarrow 1145m^3$)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18,400천원이 과다 계상되었고

2. 석축 헐기 자재(잡석) 유용자재로 미 반영

석축 헐기 시 발생한 잡석 $2,409m^3$ 는 현장자재로 유용⁸⁰⁾되는 것으로 설계

79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
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아 7,684천원(제경비 포함)이 과다 계상되었다.

3. 실 운반거리에 따른 사토 운반비 미 정산

사토운반거리는 L=10km로 설계되어 있으나, 실제운반거리 L=1.0km로 운반거리 축소량(4,048 m^3)에 대한 정산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15,013천원이 과다 계상되었다.

[표] 석전 소하천 정비사업 감액 내역 (단위 : 천원)

공종	설계반영 (제경비 제외)		변경(B) (제경비 포함)		감액 (제경비 포함)		감액사유	비고
	수량	금액	수량	금액	수량	금액		
계		246,525		343,215		41,097		
호안공	1,630	135,776	1,145	207,863	485	18,400	전석쌓기 수량 오류	
토공	2,409	27,395	2,409	30,742	2,409	7,684	과다 계상	
토공	17,517	83,354	17,517	104,610	17,517	15,013	미 정산	

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

○○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과다 계상된 41,097천원을 감액조치 하시고, 사업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

80) 돌망태 혈기에서 발생한 잡석은 실제 시공현장에서 호안공 뒷채움재로 유용